

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10. 2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대안교육기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개정 및 시행(2025. 7. 22.)에 따라 담양군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, 대안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인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원처우 개선지원 근거 마련(안 제5조)
(신설) 교육환경 및 교원처우 개선비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10. 2. ~ 10. 10.(8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3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
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교육환경 및 교원처우 개선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대안교육기관의 지원) 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. 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3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	제5조(대안교육기관의 지원) ① 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<u>3. 교육환경 및 교원처우 개선</u> <u>비</u>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